

## 학위논문제출기간(재학연한)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

**제1조(목적)** 본 지침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특례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특례자 범위)** 특례조치 대상자는 특례조치 시행일 현재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에서 정한 학위논문제출기간(재학연한) 초과로 인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영구수료자로 한다. 단, 어학시험 또는 전공시험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제출시까지 반드시 합격하여야 한다

**제3조(특례제외자의 범위)**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

**제4조(특례신청)** 특례신청은 매학기 시작 전에 하도록 하되, 1회에 한한다. 특례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구비서류)** 특례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 재입학청원서(서식 1호) 1부
2. 성적증명서 1부

**제6조(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)** 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신청자의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
2. 박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

**제7조(등록)**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특례신청 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, 학위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특례신청 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, 학위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특례허가 및 취소)** ① 특례재입학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특례가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특례자는 휴학할 수 없다.

③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한다.

**제9조(학적관리)** 재학연한 특례조치 신청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학적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록·관리한다.

0000학년도 0학기 재학연한 특례신청자

**제10조(준용)**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을 준용한다

**부칙(2010.10.26)**

① (시행일) 본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서식 1>

##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 재입학 청원서

No.

석 · 박사 학위과정

학 과		전 공		
성 명		학 번		
입학년도		최종취득학점		
주 소				
자택전화		H. P.		
직 장 명		직장전화		
지도교수		종합시험 합격여부 (O,X)	어학	전공

위와 같이 청원하오니 재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\*첨부서류: 석사,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

신청자 : (인)

중앙대학교 \_\_\_\_\_계열 부총장 귀하

##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 재입학 허가서

No.

석 · 박사 학위과정

학 과		전 공		
성 명		학 번		
지도교수				
비 고				

위와 같이 재학연한(학위논문제출시한)초과자에 대한 특례 재입학 청원을 허가함.

년 월 일

담당자 : (인)

중 앙 대 학 교 \_\_\_\_\_계 열 부 총 장

⇒ 절차:①원서교부(계열 대학원담당자, 인터넷)→②성적증명서발급(자동발급기)→③학과장경유→④신청서접수(계열 대학원담당자)→⑤등록금납부(학교내우리은행)